## 택시운임 및 요율 결정 고시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8조(운임·요금의 신고 등)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(운임·요금의 신고) 규정에 의거 택시운송사업 운임·요금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관내 택시운임 및 요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하고자합니다.

2022년 12월 06일

## 영 동 군



## 1. 목적

영업용 택시의 요금의 심야할증 요금을 조정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- 2. 택시운임 및 요율 결정내용(중형택시)
- ※ 심야할증 조정(심야할증 외 기본요금, 거리요금, 시간요금 등은 변동사항 없음

	기 준		현 행	변 경	비고
기본운임			3,300원/1km	3,300원/1km	
거리운임			92m당 100원	92m당 100원	복합할증율 50%적용
시간운임 (15Km/이하 주행시)			23초당 100원	23초당 100원	복합할증율 50%적용
할증 운임	심	22:00-23:00	_	20%	심야할증 변경
	Oŧ	23:00-00:00	_	40%	심야할증 변경
	운	00:00-02:00	20%	40%	심야할증 변경
	행	02:00-04:00	20%	20%	기존과 같음
	시계외 운행		20%	20%	
호출료			1,000원	1,000원	

※ 호출료는 무선호출시스템을 갖춘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경우에 한하며 귀로 시에는 복합할증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.

## 부 칙

- 1. 이 고시의 시행은 2022. 12. 16일 22:00시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고시 제2019-32('19. 3. 14.)호는 폐지한다.